한국대학스키연맹 학생위원회 회칙

개정일: 2024.03.27.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대학스키연맹 학생위원회(이하 학생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회는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산하 전국 규모 경기 단체인 한국대학스키연맹의 구성원이다.

제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스키 실력을 향상하고, 타스키팀과 교류하며, 동계스포츠의 발전과 확산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제4조 (준수) 본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한다.

제5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한국대학스키연맹에 회원 가입된 대학 팀이며,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제2장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그리고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 및 회칙 준수 의무가 있다.

제7조 (회의 구성) 본회는 제5조에 결격 사유가 없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회의 기구) 본회는 학생위원장 및 임원 그리고 각 학교 주장단으로 이루어진다.

제2장 회 원

제9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 대학 팀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항 정회원: 정회원은 한국대학스키연맹에 소속된 대학 팀 중 본회에서 그 자격을 부여받고, 회비를 납부한 구성원이 속한 대학 팀을 지칭한다.

제2항 준회원: 준회원은 한국대학스키연맹에 소속된 대학 팀 중,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 받고, 회비를 납부한 구성원이 속한 대학 팀을 지칭한다

제3항 승격: 준회원으로서 1년 간 학생위원회가 주도하는 행사의 참석률이 50% 이상이고 주장단 회의 참석률이 70% 이상인 경우 승격 대상이 되며 제5항을 따른다.

제4항 강등: 정회원 중 합숙을 제외한 모든 행사에서 참석률이 50% 미만일 경우 제25조 제2항에 따라 강등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각 행사에 1명 이상의 구성원이 참가 시, 해당 학교의 참석을 인정한다.

제5항 자격 심사: 학생위원장은 매 시즌 마지막 주장단 회의에서 1년간 참석률을 바탕으로 승격 및 강등 투표 대상학교를 발표한다. 그 후, 차기 학생위원장의 첫 주장단회의에서 대상 학교에 대한 승강투표를 진행,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사회 승인을 득한 결과는 즉시 발표한다.

제10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1조 (선거권) 정회원은 본회 내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본회 내의 각종 선거권을 가진다.

제3장 학생위원회

제12조 (학생위원장의 선임 및 지위) 차기 학생위원장은 현 학생위원장의 임기 내 마지막 주장단회의에서 선출하여 본회를 대표한다.

제13조 (학생위원장의 직능) 학생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직능을 갖는다.

제1항 정기총회, 주장단회의 및 임시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항 본회의 모든 행사를 지휘, 감독한다.

제3항 대회 및 행사 중 사고시, 학생위원장은 의무실 또는 응급실의 이송을 책임진다.

제14조 (학생위원장 및 임원의 임기) 학생위원장 및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보궐선거 시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부위원장의 지위 및 직무) 부위원장은 학생위원장 유고 시, 학생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학생위원회 구성) 학생위원장은 해당 연도 학생위원회 조직을 구성하되 그 결과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장 회의 및 행사

제17조 본회의 의사결정은 정기총회, 정기 주장단 회의, 임시 회의를 통해 진행한다.

제1항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에 각 대학 팀의 주장단이 참여하여 진행한다. 의장은 학생위원장이 한다.

제2항 정기주장단 회의: 학생위원장은 임기 내 8번 이상 정기 주장단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정기주장단 회의는 학생위원회 및 각 대학 팀의 주장단으로 한정한다.

제3항 임시회의: 임시회의는 학생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학생위원회 및 각 대학 팀의 주장단으로 한정한다.

제4항 의결권 위임: 대학 팀의 주장은 의사결정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 참석치 못할 시에는 대리인 지정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한다.

제18조 (의결정족수)

제1항 정기총회: 정회원 학교 주장, 주장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하 대표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이루어지며,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 주장단 회의: 정회원 학교 대표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임시회의: 정회원 학교 대표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행사)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갖는다.

제1항 정기행사

1) 주장단 LT

2) 신입생 환영회

3) 한국대학스키연맹 하계 MT

4) 체육대회

5) 스키대회

제2항 비정기 행사 비정기 행사는 해당 연도 학생위원회에서 구성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5장 학생위원장 선거

제20조 학생위원장의 선거 출마 자격은 정회원 대학 팀 재학생이면서 1년 이상 대학 팀의 활동에 참여한 학생으로, 현 학생위원장의 추천을 받거나 10개 대학 팀 주장의 추천서를 받은 학생으로 한다.

제21조 학생위원장의 선출은 비밀투표로 진행하며, 회원들의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각 학교 당 투표권은 주장과 차기 주장에게 총 2장이 주어진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장 재정

제22조 본회의 경비는 본회 회원의 회비로 충당한다.

제23조 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제1항 납부: 본회의 회원 학교는 매년 한 번씩 선수등록비를 내야한다.

제2항 차등: 회비는 총 3번에 걸쳐서 받으며 (1학기, 2학기, 시즌) 금액은 후에 낼수록 더 늘어난다. 또한 정회원인 학교와 준회원인 학교 역시 차등하여 납부한다. 납부 기한은 학생위원장 및 회계팀 부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4조 본회의 결산보고는 1년의 임기가 끝난 후 회계팀 부위원장이 이사회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징계

제25조 (징계) 학생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대학 팀에게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제1항 부정선수를 대회에 참여시킨 대학 팀.

- 부정선수: 미등록자, 대리인, 1부 자격의 2부 경기 출전 선수

- 공식 사과 및 2년간 준회원 강등, 준회원의 경우 퇴출
- 부정선수: 영구 제명

제2항 1년 간 주장단 회의와 정기행사의 참석률이 50% 미만인 대학 팀.

- 참석률 50% 기준은 학생위원장이 첫 번째 주장단 회의에서 반드시 공지해야 하며, 참석률 기준을 미달한 학교는 제9조 제4항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투표를 통하여 1년 강등 및 퇴출을 결정한다.

제8장 가입

제26조 (가입) 한국대학스키연맹에 가입을 희망하는 대학 팀은 한국대학스키연맹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르며, 주장단회의에서 준회원 가입신청 및 발표 후 결정한다.

제27조 (가입비 납부): 한국대학스키연맹에 준회원 가입이 승인된 경우,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학생위원장은 준회원 가입 승인을 이사회에 요청할 때 가입비 면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장 한국대학스키연맹 개최 대회 참가 자격

제28조 (1부 자격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1부의 자격을 얻는다.

제1항 초등학교 졸업 이후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에 알파인 스키 종목 엘리트 선수등록이 되어 있었던 자.

제2항 초등학교 졸업 이후 대한스키지도자연맹에 주니어데몬스트레이터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 자.

제3항 대한스키지도자연맹 Level3 이상 자격 보유자, 스키장경영업협회 티칭3 이상 자격 보유자.

제4항 한국대학스키연맹 개최 스키대회 신인배를 제외한 개인전 입상기록 보유자 (3위이내).

제29조 (신인)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신인의 자격을 얻는다.

제1항 한국대학스키연맹에서 개최한 대회 출전기록이 없고 제28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2항 이전 신인배의 출전기록(DNS)이 있지만 친인척의 사망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다음 신인배 출전 자격을 갖는다.

제30조 (시상)

제1항 개인전 시상은 한국대학스키연맹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정한다.

제2항 단체전 시상은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대학스키연맹 이사회에서 정한 규칙에 의해 정한다.

제10장 회칙개정

제31조 (회칙 개정발의) 본회의 회원은 필요시 주장단회의 전에 건의사항을 학생위원회에 건의하고 주장단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제32조 (의결) 정기총회에서 의결하며, 의결 후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33조 (공포) 개정 및 수정된 회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즉시, 그 효력을 발휘한다